

◆ 3월 10일(화)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<h2 style="margin: 0;">한국대학교육협의회</h2> <p style="margin: 0;">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</p>
	<p style="margin: 0;">2026. 3. 10.(화)</p> <p style="margin: 0;"><a href="http://www.kcue.or.kr">http://www.kcue.or.kr</a></p>	

☎ 02-6919-3831~6,8 대학입학지원실장: 김삼열 입학기획팀장: 이성은 담당: 박지현  
 ☎ 044-203-6892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신진용 사무관 오명준

## 『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』 안내

□ 한국대학교육협의회(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, 이하 대교협)는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4단계 여행정보(여행금지) 및 중동 7개국\*에 대한 3단계 여행정보(출국권고)를 각각 발령함에 따라, 현지 교민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.

\* 바레인, UAE, 오만, 카타르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지역, 요르단 일부지역

구분	특례 적용 내용(안)
재직요건 (보호자)	- (해외파견재직자)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(1,095일)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,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폐명령일부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 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- (자영업자, 현지취업자) 중동지역 8개국 현지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'26.3.8. 이후(단, 이란은 '26.3.5. 이후)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
재학요건 (학생)	-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재학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
체류요건	- 국내 기준 최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시점까지 학생 및 부모의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
서류	- 특례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상황 등을 고려, 사후제출 처리 가능

□ 이번 특례를 통해,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중인 교민이 외교부의 여행정보 발령시점 이후에 조기귀국 또는 일시귀국하더라도,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(재직, 재학, 체류 요건)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,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*[붙임] 중동 상황 악화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 1부. 끝.**

##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

- 최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교민의 현지체류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
  - ※ 외교부는 '26.3.5. 자로 이란 전역의 여행경보를 여행금지(4단계), '26.3.8. 자로 중동 7개국(바레인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카타르, 쿠웨이트 전역,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지역\*, 요르단 일부 지역\*\*)의 여행경보를 출국권고(3단계)로 발령
    - \* 라스 타누라 지역(아람코 정유시설 위치),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,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
    - \*\*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
- 이에, 중동 지역 재외국민의 조기귀국 또는 일시귀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특례 적용 내용(안)
재직요건 (보호자)	- (해외파견재직자)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(1,095일)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,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회수령일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 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- (자영업자, 현지취업자) 중동지역 8개국 현지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'26.3.8. 이후(단, 이란은 '26.3.5. 이후)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
재학요건 (학생)	-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재학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
체류요건 (학부모, 학생)	- 국내 기준 최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시점까지 학생 및 부모의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
서류	- 특례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상황 등을 고려, 사후제출 처리 가능

- ※ 구체적인 요건인정 기간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중동지역 현지 및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
- ※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대학별로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을 권장함
- ※ 중동지역 분쟁상황 연장 시, 추후 특례 연장 가능